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4-25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12호) 예인선 웅진티-3600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웅진티-3600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인***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웅진티-3600호가 피예인선 웅진G-25S호의 우현 선미 닻에 걸린 어구줄 제거작업을 시도하던 중 2023. 5. 29. 08:12경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진서말 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9.7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너울성 파도가 있는 해상에서 웅진티-3600호 선장이 무리하게 피예인선 웅진G-25S호 선미 닻에 걸린 어구줄을 제거하던 중 웅진티-3600호 선체가 돌며 웅진G-25S호의 돌출된 닻 가지에 선체가 박히고 침수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고, 전복 전 어구 접촉사건은 웅진티-3600호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기수립된 자체 운항통제기준 내용과 운항통제기준 준수에 대해 교육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